

# 모리셔스 (Mauritius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편적 / 사회보험(국민연금) / 사회보험(저축기금) 적용대상	모리셔스 거주자 / 일부 외국인 포함 민간부문 근로자 / 준정부기관 근로자 및 외국인 포함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	모리셔스 거주자 / 일부 외국인 포함 민간부문 근로자 / 준정부기관 근로자 및 외국인 포함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	-
사회보험(국민연금) 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% / 최저 월 160 Rs / 6%	3% / 최저 월 170 Rs 최고 월 990 Rs / 6%	자영자 최저 월 보험료 인상 및 상한액 신설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16,655 Rs / 2,550 Rs	17,470 Rs / 2,680 Rs	상하한 소득 인상
노령연금 수급요건 (보편적 / 사회보험)	60세 이상 및 18세 이후 12년 이상 모리셔스 거주 / 63세 이상 및 연금점수 150점 이상	60세 이상 및 18세 이후 12년 이상 모리셔스 거주 / 65세 이상 및 연금점수 150점 이상	연령 수급요건 강화
노령연금 지급률 (보편적 / 사회보험)	60세 ~ 89세 : 5,450 Rs 90세 ~ 99세 : 5,450 Rs 100세 ~ : 5,450 Rs / 연금점수 토대로 산정	60세 ~ 89세 : 6,210 Rs 90세 ~ 99세 : 16,210 Rs 100세 ~ : 21,210 Rs / 연금점수 토대로 산정	보편적 노령연금 지급액 인상
일시금 (사회보험 및 저축기금 노령급여)	사용자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 - 이전 지급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	사용자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 - 이전 지급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0년(노령), 1950(비기여연금)
- 현행법 : 1976년(국민연금), 1995(저축기금)

## 2 제도형태

- 보편적 및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보편적
  - 적용대상 : 모리셔스 거주자

- 사회보험(국민연금)
  - 당연적용 :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민간부문 근로자
  - 임의적용 : 자영자 및 비근로자를 포함한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자
  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 및 국영회사 근로자
  
- 사회보험(저축기금)
  - 당연적용 : 준정부기관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
  - 적용제외 : 자영자

---

## 4    **재원조달**

---

- 근로자
  - 기초연금 : 없음
  - 사회보험(국민연금) : 월 소득의 3%, 비근로자는 최저 월 160 rupees, 저소득 농민 및 가정노동자는 부담 없음
   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하한소득 : 월 2,680 rupees(가사 근로자 : 1,695 rupees)
   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상한소득 : 월 17,470 rupees
  - 사회보험(저축기금) : 없음
  
- 자영자
  - 기초연금 : 없음
  - 사회보험(국민연금) : 최저 월 170 rupees
    - 월 보험료 상한액은 990 rupees
  - 사회보험(저축기금) : 해당 없음
  
- 사용자
  - 기초연금 : 없음
  - 사회보험(국민연금) : 월 임금지급액의 6%, 제분업자 및 대형제당사업자는 10.5%
   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하한소득 : 월 2,680 rupees(가사 근로자 : 1,695 rupees)
    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상한소득 : 월 17,470 rupees
    - 사용자 납입 보험료는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  - 사회보험(저축기금) : 없음
  
- 정부
  - 기초연금 : 총비용
  - 사회보험(국민연금) : 결손액을 충당하고 저소득 농민 및 가사 근로자를 위해 납부
  - 사회보험(저축기금)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## 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기초 퇴직연금, 보편적)
  - 60세 이상으로 모리셔스 국민의 경우 18세 이후에 12년 이상 모리셔스에 거주하였어야 하며(70세 이상일 경우 거주 요건 없음), 외국인의 경우 급여청구 직전 3년을 포함, 40세 이후 15년 이상 모리셔스에 거주
  - 고용은 지속될 수 있음
  - 급여 해외지급은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가능
  - 상시간병수당 : 60% 이상의 장애로 판정되고 일상생활을 위해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- 수감자수당
  - 국고로 운영되는 수용시설에 수감 전 보편적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수감자에게 지급
- 노령연금(기여형 퇴직연금, 국민연금, 사회보험)
  - 65세 이상으로 연금점수 환산 시 150점 이상 납부이력 보유(2012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납부이력 요건 면제)
  - 연금점수 환산 방법은 정부가 계리 추정에 따라 결정
  - 60세에 조기 연금 수급가능
  - 고용은 지속될 수 있음
  - 연기연금 : 70세까지 연기 가능
  - 사회보험 노령연금은 해외지급 가능
- 노령급여(저축기금, 사회보험)
  - 65세 이상

## 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기초 장애연금, 보편적)
  - 60세 미만이며,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60% 이상의 장애로 판정된 경우
  - 모리셔스 국민은 거주요건이 없음
  - 외국인은 급여청구 직전 1년 포함, 과거 10년 중 5년 이상을 모리셔스에서 거주한 경우
  - 장애정도는 의료위원회에서 판정
 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 타인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기초 장애연금 수급자
  - 자녀수당 : 기초 장애연금 수급자의 15세미만(전업 학생인 경우 20세) 최초 세 자녀 까지 지급
  - 보편적장애연금은 해외지급 불가능
  - 보편적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며 보편적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소득비례 장애연금(기여형 장애연금, 국민연금, 사회보험)
  -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60% 이상의 장애로 판정되고 최소 가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
  - 장애정도는 의료위원회에서 판정
  - 사회보험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보편적)
  - 미망인연금(기초 미망인연금) : 60세 미만의 미망인에게 지급되나, 사망자와 미망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둘 중 한명은 급여청구 직전 1년을 포함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모리셔스에 거주해야 하며, 재혼 시 연금은 중단됨
  - 자녀수당 : 15세 미만 처음 세 자녀(전업 학생인 경우 20세)에게 지급. 재혼 시에도 중단되지 않음
  - 고아연금(기초 고아연금) : 15세 미만(종일제 학생인 경우 20세) 완전고아에 지급되나, 고아가 외국인인 경우 고아나 부모 중 한명은 청구 직전 1년을 포함하여 최종 10년 중 5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
  - 후견인수당 : 고아연금을 수령하는 고아의 후견인에게 지급
- 유족연금(국민연금, 사회보험)
  - 배우자연금(기여형 미망인연금) : 사망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되나, 재혼 시 연금은 중단되고 재혼 청산금이 지급됨
  - 고아연금(기여형 고아연금) : 사망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5세 미만(전업 학생은 20세 미만)의 완전 고아에게 지급
  - 사회보험 유족연금은 해외지급 가능
- 유족급여(저축기금, 사회보험)
  - 가입자가 퇴직 전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권 있는 유족에게 지급
  - 수급가능 유족은 우선순위대로 배우자, 피부양 자녀 또는 사망자의 법적 대리인이 있음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기초 퇴직연금, 보편적)
  - 60세~89세는 월 6,210 Rs, 90세~99세는 월 16,210 Rs, 100세 이상은 월 21,210 Rs 지급
  - 상시간병수당 : 월 3,000 Rs
  - 급여액은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
- 수감자수당(보편적) : 월 790 Rs
  - 급여액은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
- 노령연금(기여형 퇴직연금, 국민연금, 사회보험)
  -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여되는 연금점수를 토대로 산정되며, 정부가 계리 추정에 따라 연금점수의 가치를 책정함
 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대비 연금이 조기에 청구된 각 월당 0.45% 감액
  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대비 연금이 이후에 청구된 각 월당 0.67% 증액
  - 급여액은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
- 노령급여(저축기금, 사회보험)
  - 사용자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 - 이전 실업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- 장애연금
  - 장애연금(기초 장애연금, 보편적)
    - 월 6,210 Rs
    - 상시간병수당 : 월 3,000 Rs
    - 자녀수당 : 수급권 있는 자녀 당 10세 미만 월 1,400 Rs, 10세 이상 월 1,500 Rs
  - 장애연금(기여형 장애연금, 국민연금, 사회보험)
    -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여되는 연금점수를 토대로 산정되며, 정부가 계리 추정에 따라 연금점수의 가치를 책정함
  
- 유족연금
  - 유족연금(보편적)
    - 미망인연금(기초 미망인연금) : 월 6,210 Rs
    - 자녀수당 : 수급권 있는 자녀 당 10세 미만 월 1,400 Rs, 10세 이상 월 1,500 Rs
    - 고아연금(기초 고아연금) : 3세~20세의 아동 및 전업 학생 당 월 5,210 Rs, 15세 미만 비전업 학생 또 및 완전고아에게 월 2,950 Rs
    - 후견인수당 : 월 1,000 Rs
    - 급여액은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
  - 유족연금(국민연금, 사회보험)
    - 배우자연금 :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여되는 연금점수를 토대로 계산되며, 미망인에게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12개월 후 33.3% 감액
    - 정부가 계리 추정에 따라 연금점수의 가치를 책정함
    - 최저연금액 없음
    - 재혼청산금 : 재혼 시 배우자연금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    - 고아연금(기여형 고아연금) : 사망자가 수령하던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회보험 노령연금액의 15%를 완전고아에게 지급
  - 유족급여(저축기금, 사회보험)
    - 사용자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 - 이전 실업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보장 국민연대 및 환경지속가능개발부(Ministry of Social Security, National Solidarity,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)
  - 3자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, 전반적 감독 제공 및 제도 운영
  - <http://socialsecurity.govmu.org>
  
- 재정경제개발부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)
  - 국민연금기금(National Pensions Fund)의 잉여자산 투자 감독
  - <http://mof.govmu.org>

- 모리셔스 조세당국(Mauritius Revenue Authority)
  - 보험료 징수
  - <http://www.mra.mu>

<2019년 ISSA 자료>